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 14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책임, 실무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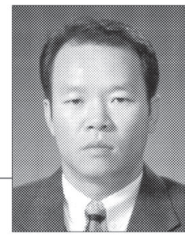
근로기준법은 동법 제10조의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동법 제15조의 사용자는 사업

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이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 운영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복지관장이 근로자의 채용·근로조건의 결정·업무상 지휘감독 등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설사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부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르고, 복지관장 임명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대표가 임명하는 형식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의 위·수탁계약이 유효한 범위내에서는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임.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522)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부동산경매진행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으로 그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강제경매가입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지요?

제3자를 위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한 후, 그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에 소급하게 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가입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77조, 제55조 제2호, 1988. 3. 24. 87타1270).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 17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 및 일정기간내에 이의가 없으면 경매개시결정가입등기를 직권말소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집행법원이 그 통지를 받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한편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가입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게 됩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전·기·상·식

한전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장 신재우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한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명의변경 및 전기 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해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게 되므로 구고객의 전기요금과 신고객이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구고객의 이사일 하루 전 한전 근무시간까지 아래의 주민서류를 갖추셔서 관할 한전에 직접 내방 또는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 아파트 고객은 신청불가)

☞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변동일이 속한 월의 신·구고객별 사용전력량은 고객과 한전지점의 결정합니다.)

이전 세입자의 체납으로 인해 단전되었는데 새로 이사온 사람이 전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고객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전기사용계약 해지)된 경우 신고객이 명의변경을 하시면 전기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히 받으실것)과 임차인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시고 관할 한전에 명의변경(전기사용변경신청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031-529-0257)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내과 과장 박선수



위식도 역류질환

위식도 역류질환이란 위 혹은 십이지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흉부작열감, 산 역류등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거나 식도의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서양에서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질환으로 재발이 흔하며, 적절한 치료와 시행되지 않고 위식도 역류가 지속된다면 식도협착이나 식도암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위식도 역류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유발될 수 있는데, 가슴이 타는 듯한 흉부작열감이나 위산 역류와 같은 전형적인 증상 외에도 흉통, 권 복소리, 인두 이물감 및 인후통, 만성적인 기침 및 천식과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이 유발되기도 한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식도조영술, 내시경검사, 24시간 식도산도검사 등의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흉부작열감, 위산 역류와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만성적으로 있다면 증상을 기침, 인두 이물감 및 인후통, 권 복소리 등과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호흡기나 혹은 이비인후과적으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면 적절한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 흉부작열감은 가슴쓰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통상 식후 30분에서 2시간 정도에 나타나고 10분 이상 지속되지 않으며 한번에 수시간씩 지속되지는 않으며 제산제에 의해 조기에 완화되기도 한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반드시 식도점막의 손상이 심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내시경에서 매우 심한 역류성 식도염의 소견을 보이는 환자에서도 그 증상은 경미한 경우도 종종 있다. 위식도 역류의 진단을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흔히 시행되는 검사는 내시경 검사

이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식도 점막의 손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위나 십이지장 등 다른 상부 위장관의 이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식도조영술은 내시경에 비해 예민도나 특이도가 떨어지므로 1차 검사로는 부적합하며, 24시간 식도산도검사는 위식도 역류가 실제로 증상을 유발하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검사법이나, 전형적인 역류에 의한 증상이 있고 내시경 검사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진단되면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다.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사람은 잘 때 침대의 머리부분을 올리거나 배개를 높게 베고, 식후 2-3시간 이내에는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좋다. 담배를 끊고, 비만한 경우는 체중을 줄이고, 복압을 높일 수 있는 몸에 조이는 내의나 옷의 착용을 피하는 것이 위식도 역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취침 전에는 음식물 섭취를 삼가고, 지방식을 줄이고, 과식을 피하며, 초콜렛, 술, 커피, 박하, 탄산음료의 섭취를 피하는 것도 위식도 역류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와 제산제를 사용하는 것이 과거에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1차 치료로 많이 시행되었으나, 현재에는 생활 습관의 변화와 함께 보다 강력한 위산분비억제제인 Proton pump inhibitor를 초기 치료에 사용한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문의전화 : 031-539-9188)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법인에 양도한 상표권의 등록·출원 비용 및 관리비용은 법인의 회계, -심판례-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를 현 물출지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법인 명의의 등록·출원된 상표권을 본인에게 상표권 존속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사용권설정을 하고, 상표권의 등록·출원비용 및 관리비용 등을 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통상사용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출된 제비용 등을 법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한 것을 개인의 사업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가?

개인 등록·출원한 상표권 등을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에 의거 법인이 사용하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제비용을 법인이 대신 지출한 금액과 상표권 전용사용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상표권 등의 대여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국세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판결 정례.

-개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의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개인소유 상표권에 대해 법

인이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통 상표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상표권의 국내의 출원·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의법인이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표권통상사용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전환 이후 수차례에 걸쳐 상표권을 개발하여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등록·출원비용 등을 지출하고 법인의 장부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법인회계로 보고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국세청의 결정을 취소하였음.

이는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인용하여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중요시한 결정입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81차 정기회의 개최



- 일시 : 2008년 9월 19일(금) 오후7시
●장소 : (주)포천신문사 대회의실

- ◆위원장: 박승찬
◆상임고문: 최호열
◆고문: 이상갑 배성호 유병호 이종희
◆부위원장: 나근수
◆총무: 이수복
◆부총무: 임대섭
◆위원: 김재명 김석환 김완수 김영해 김용철 문재길 박영주 박병우 배의남 손상익 송현섭 성능모 신관수 손재우 이희자 이기형 임영근 유명천 장계수 정한섭 최인환 (가나다순, 총 30명)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포천신문이 전국 최고의 지역정론지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지원함과 동시에 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포천신문의 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
★포천신문의 취재보도 및 부대사업 지원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포천신문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연구